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53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폐지 또는 선택적 적용 (임광현·정태호· 차규근의원안)	3

I. 개요

1.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15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광현의원 등 29인
- (2) 제 안 일 : 2024. 9. 20.
- (3) 회 부 일 : 2024. 9. 23.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여 2단계의 누진세율로 분류과세하도록 하면서,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납부 제도를 두었으나, 반기별 원천징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확정신고 및 납부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장의2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삭제 등].
- 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안 제127조제1항, 제128조제1항, 제129조, 제5장제1절제7관(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 삭제 등].
- 다.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부칙 제3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폐지 또는 선택적 적용 (임광현·정태호·차규근의원안)

법률 제17757호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개 정 안
☐ <u>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제87조의21)</u> ○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 예정신고 대상소득을 지급 받은 자는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함	☐ <u>삭 제</u>
☐ <u>예정신고납부(제87조의22)</u> ○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시 납부 - 예정신고 산출세액에 감면세액을 뺀 세액(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함	☐ <u>삭 제</u>
☐ <u>원천징수의무(제127조)</u>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함 ○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	☐ <u>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삭제</u> (임광현·정태호의원안) ○ (현행과 같음)
☐ <u>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128조)</u> ○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	☐ <u>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 삭제</u> (임광현·정태호의원안) -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개 정 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 ☐ 제7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제148조의2) - 원천징수배제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경우	- <u>삭 제</u> ☐ <u>삭 제</u> (임광현·정태호의원안) ○ <u>삭 제</u> (임광현·정태호의원안) ○ <u>원천징수배제 사유 추가</u>(차규근의원안) - 원천징수배제 · (현행과 같음) · <u>해당 계좌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u> <u>* 그 외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환급),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중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조문을 정리함.</u>

* 임광현의원안 2024. 9. 20. 발의(의안번호 4153),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67), 차규근의원안 2024. 10. 30. 발의(의안번호 5026)

☐ 3건의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반기별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납부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건의 개정안 모두 예정신고 및 납부제도를 삭제하고 있으나, 임광현·정태호의원안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까지 삭제하려는 것인 반면, 차규근의원안은 신청을 통해 계좌에 대한 원천징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임광현·정태호의원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

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152)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143)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차규근의원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025)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에서는 금융회사 등을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과세기간의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 등에 의해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예정신고·납부 제도를 두고 있음.

- 3건의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반기별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납부제도를 삭제하는 등 원천징수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투자자의 기회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는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반기별로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누적관리하도록 하여 원천징수 기간 중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만 개인이 인출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조세채권의 확보를 이유로 투자자로 하여금 이익을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투자자는 인출 제한된 재원을 투자에 활용하지 못해 추가적인 시세차익이나 복리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결국 원천징수는 투자자의 재원을 일정 기간 무이자로 빼앗은 후
걸거나 돌려주는 것과 같아 원천징수세액을 재투자할 경우 발생하
는 투자이익의 기회를 상실하는 등 투자자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
는 문제점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원천징수를 폐지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경우 납세
자 스스로 신고·납부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상품의 연
간 손익현황 이력관리부터 기본공제 그룹별 손익통산 등 복잡한
과세표준 계산 및 세액산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편의성이 떨어
질 우려가 있음.

또한, 당해 과세기간 동안 금융투자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향후
손실 이월공제 제도 적용을 위해 결손금 내역을 신고·관리해야하
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둘째, 신고자료와 금융회사 제출자료를 교차검증하여 탈루 여부 등
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행정력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체납 발생 가능성 등 조세채권 확보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7